

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312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2월 26일
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시장은 구의회 예산안 심의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확인 의무는 자치구청장에게 부여하고, 폐지·감액된 지출항목이라도 자치구의회가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재해 발생 등 특별한 경우는 교부금 지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자치구청장은 자치구의회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함(안 제11조 제5항).

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제5항을 중 “시장은 자치구의회 의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없다.”를 “자치구청장은 자치구의회 의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없다.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1조(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) ① ~ ④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	<p>제11조(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<u>시장은</u> 자치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<u>교부할 수 없다.</u></p>	<p>제11조(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<u>자치구청장은</u> 자치구회의의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<u>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</u> 특별교부금을 <u>신청할 수 없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자치구청장은 자치구의회 의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) ① ~ ④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〈신 설〉</u></p>	<p>제11조(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) ① ~ ④ (생 략)</p> <p>⑤ <u>자치구청장은 자치구의회의 예산 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없다.</u></p>